

1. 개정이유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명령 문서 등을 표준화하고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선 명령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제1항, 별지 제2호서식)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을 초과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령하는 서면 서식을 새로이 마련한 것임

나.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 서식 마련(안 제11조의3제1항, 별지 제2호의5서식)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서면 서식을 새로이 마련한 것임

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내용 변경(별지 제2호의10서식)

신청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입란 및 인증 신청서 작성 대상을 추가(키즈카페)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 활동공간 개선 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개선조치 기한을 적어 해당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 제2호의4서식”으로, “내주어야”를 “내줘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20일”을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20일”로, “해야”를 “해당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 제2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2호의7서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6서식”을 “별지 제2호의8서식”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1조의5제2항 중 “별지 제2호의7서식”을 “별지 제2호의9서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2호의6서식”을 “별지 제2호의8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의8서식”을 “별지 제2호의10서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근”을 “환경안심 시설 인증 신청일부터”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의9서식”을 “별지 제2호의11서식”으로, “별지 제2호의10서식”을 “별지 제2호의12서식”으로, “내어주어야”를 “내어줘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3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호 및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의6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12서식까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제15조 관련)

1. 제1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가.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보육실) 기준 또는 75제곱미터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50,000
나.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00,000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1)·2), 같은 표 제3호 및 같은 표 제5호가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기본검사의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의 면적 또는 교실 수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다.
5. 75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하는 실내어린이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호·제7호의 시설에 한정한다.

2.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정밀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가. 도료나 마감재료	1) 납	44,200
	2) 카드뮴	44,200
	3) 수은	44,200
	4) 6가크로뮴	44,200
	5)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7종)	150,000
나.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1)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1,250,000

	가) 폼알데하이드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2)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 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폼알데하이드	124,000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39,000
다. 목재 방부재	다음의 시험항목 전부	160,000
	1)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2) 크로뮴 · 구리 · 비소 화합물계 1호, 2 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 · 플루오르화구리 · 아연 화합물 계 (CCFZ)(삭제)	
	라. 크롬 · 구리 · 붕소 화합물계(CCB)(삭제)	
라. 모래 등 토양	1) 납	44,200
	2) 카드뮴	44,200
	3) 수은	44,200
	4) 6가크로뮴	44,200
	5) 비소	44,200
	6) 기생충(란)	39,300
마. 합성고무 재질 바닥 재의 표면재료	1) 납	44,200
	2) 카드뮴	44,200
	3) 수은	44,200
	4) 6가크로뮴	44,200
	5) 폼알데하이드	45,000
	6) 프탈레이트(7종)	150,000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기생충(란)(삭제)	39,300

-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프탈레이트류(7종)”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3)에 따른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 함량을 말한다.

3. 어린이용품과 관련한 시험·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한 환경유해인자	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90,000
	나.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90,000
	다. 트라이부틸 주석(Tributyltin compounds, 688-73-3)	90,000
	라. 노닐페놀(Nonylphenol, 025154-52-3)	90,000

비고

1. 수수료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제 호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위반 내용 :
6. 위반 장소 :
7. 지도·점검 또는 확인검사 일자 :
8. 개선조치 사항 : ☐ 시설 개선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9. 개선조치 기한 : 년 월 일까지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내에 위반 내용을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직인

첨부서류 : [] 개선명령 상세내역 1부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자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개선 사항

개선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	-------------	---	----	---	-------	---	----

보고자

처리기관 : 시·군·구·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어린이활동공간 소재지)			
대리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사업장 소재지)			
검사신청내용	어린이활동 공간의 종류	[] 어린이놀이시설 [] 보육실 [] 교실 [] 학교도서관 [] 기타		
	검사대상	[] 신축, 연면적	m ²	
		[] 증축, 연면적	m ²	
		[] 수선, 면적	m ²	
신축, 증축, 수선일자		검사 희망일자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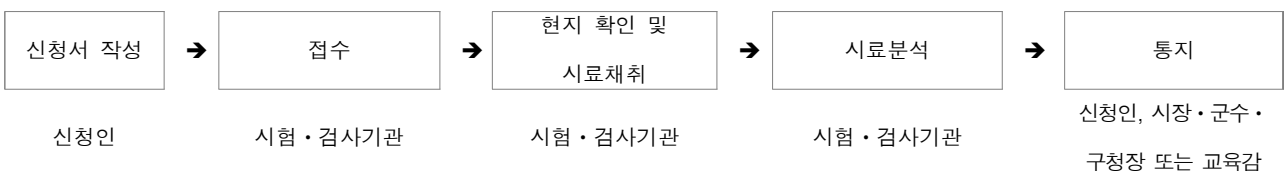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 1부.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	--------------------------	----------------------------

유의사항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한 기관

처리절차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어린이활동 공간의 관리 자 또는 소유 자)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장 주소 (어린이활동공간 소재지)	(전 화 번 호 , 전 자 우 편)	
검사결과	검사 구분	[] 기본검사	[] 정밀검사
	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세부 검사결과	뒤쪽 참조	
	조치 필요사항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의 장

직인

세부 검사결과

1. 시설물의 외관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검사 결과
	육안 검사	☐ 적 합 ☐ 부적합	

2. 도료나 마감재료

가. 1), 2) (중금속 :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중금속 검사 결과(기준, mg/kg)				
			중금속의 합 (1,000mg/kg 이하)	납 (90mg/kg 이하)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 합 ☐ 부적합					

3) (프탈레이트류,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검사 지점	적합 여부	프탈레이트류(7종*)	
		기준	검사 결과
	☐ 적 합 ☐ 부적합	총함량 0.1%	

*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나. 실내오염물질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 대상)

검사 지점	적합 여부	시험 방법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 적 합 ☐ 부적합	소형 체임버법 이용(mg/m ³ ·h)	0.02 이하		2.5/4.0 이하 (페인트/벽지)	

* 목질판상제품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0.12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0.05 이하

** 접착제는 2.0 이하, 실란트는 1.5 이하, 퍼티는 20.0 이하, 바닥제는 4.0 이하, 목질판상제품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0.8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0.4 이하

3. 목재

가. 목재 방부제(기준 : 사용금지)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검사 결과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 합 ☐ 부적합	※ 「환경유해인자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방부목재 분야의 결과의 표기 방법에 따라 표기

4. 토양

가. 중금속

검사 지점	적합 여부	카드뮴(mg/kg)		비소(mg/kg)		수은(mg/kg)		납(mg/kg)		6가크로뮴(mg/kg)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 적 합 ☐ 부적합	4 이하		25 이하		4 이하		200 이하		5 이하	

나. 기생충(란)(기준 : 불검출)

검사 지점	적합 여부	검출 종류(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 적 합 ☐ 부적합			

5.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가. 중금속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중금속 검사 결과(기준, mg/kg)				
			중금속의 합 (1,000mg/kg 이하)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로뮴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 합 ☐ 부적합					

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 지점	검사 방법	적합 여부	기준(mg/kg)	검사 결과(mg/kg)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 합 ☐ 부적합	75 이하	

다. 프탈레이트류

검사 지점	적합 여부	프탈레이트류(7종*)	
		기준	검사 결과
	☐ 적 합 ☐ 부적합	총합량 0.1%	

*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6. 실내공기질

검사 지점	적합 여부	시험 방법	폼알데하이드($\mu\text{g}/\text{m}^3$)		총휘발성유기화합물($\mu\text{g}/\text{m}^3$)	
			기준	검사 결과	기준	검사 결과
	☐ 적 합 ☐ 부적합	공기포집법	80 이하		400 이하	

제 호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확인검사 위반 내용 : ☐ 신축 확인검사 미이행
☐ 증축 확인검사 미이행
☐ 수선 확인검사 미이행
6. 확인검사 이행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 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직인

첨부서류 : ☐ 개선명령 상세내역 1부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자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확인검사 미이행 내용	[] 신축	[] 증축	[] 수선
-------------	--------	--------	--------

확인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명령의 이행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	-------------	---	----	---	-------	---	----

보고자

처리기관 : 시·군·구·교육청 (어린이활동공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3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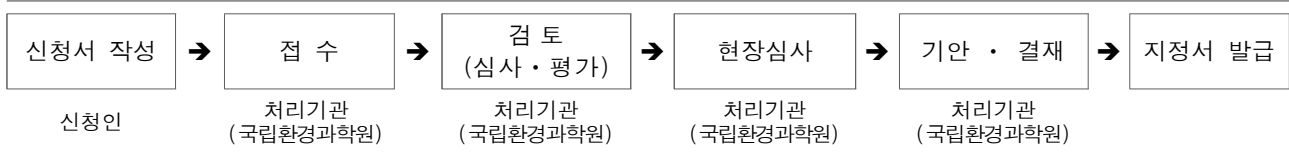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변경지정)서

1. 기 관 명 :

2. 사업자등록번호 :

3. 대 표 자 :

4. 주 소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제4항 및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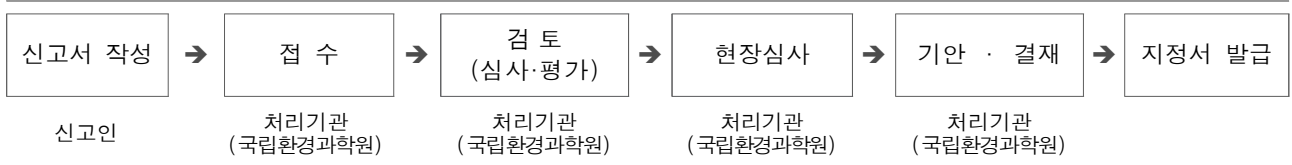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검사기관 지정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0일
신청인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성명(대표자)	성명(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구분 [] 어린이집 [] 유치원 [] 키즈카페		연면적 m ²
관리형태 [] 국공립 [] 사립 [] 기타		최초 설치(인가)일자 년 월 일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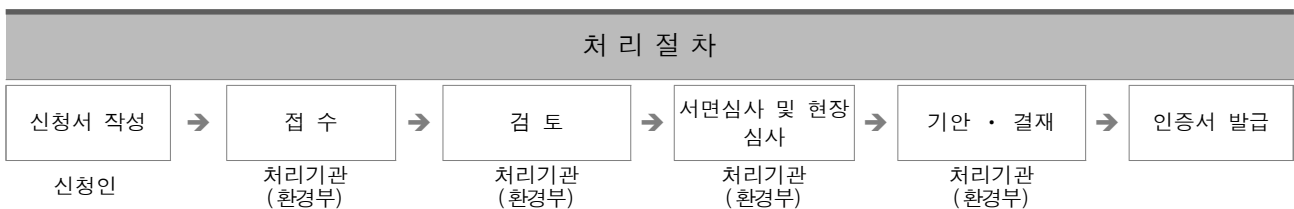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관련 성적서 1부 2.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측정 결과서 1부 3.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서

1. 시 설 명 :

2. 소 재 지 :

3.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4. 대 표 자 :

5. 인증기간 :

위 기관을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8제4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1. 크기: 가로 40cm × 세로 20cm, 두께 0.5cm
2. 재질: 아크릴 판
3. 색상: 바탕(흰색, 초록색), 글씨(검정색, 회색)

판매중지·회수 조치결과 보고서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직급 / 성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조치대상 정보	어린이용품의 명칭(상표명)	모델명
	제조량	제조기간
	수입량	수입기간
	판매량	판매기간
	거래업체명	
조치결과	조치량	미조치량
	회수 등의 권고이행 실적 내용	
	회수 등을 하지 못한 어린이용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대책	

「환경보건법」 제24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판매중지·회수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귀하

유의사항

미조치량의 내용 또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해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 ----- ----- ----- ----- ----- ----- ----- ----- -----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 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개선조치 기한을 적어 해당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u>별지 제2호서식</u> 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③ ----- ----- --- <u>별지 제2호의2서식</u> ----- -----

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의3서식-----

-----.

③ -----

----- 별지 제2호의4서식-----

----- 내줘야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명령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생략)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에 개선명령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20일--- 해당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2호의6서식-----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4(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원장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8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해야-----.

③ -----
----- 별지 제2호의8서식-----
----- 발급
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의8(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기준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2호의10서식-----

---해야-----.

1. (생 략) 2. <u>최근 1년 이내 실시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u>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측정 결과서 3. (생 략)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u>별지 제2호 의9서식</u>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u>별지 제2호의10서식</u>의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시설 현판을 <u>내어주어야</u> 한다. ⑤ ~ ⑨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환경안심 시설 인증 신청일 부터</u> ----- <u>「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u> -----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별지 제2호 의11서식</u>----- <u>별지 제2호의12서식</u>----- ----- <u>내줘야</u> ----. ⑤ ~ ⑨ (현행과 같음)
---	---